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roposals for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강 호* Ho Kang

|목 차| ----

- I. 서 론
- Ⅱ. 비확산 수출통제 국제규범
- Ⅲ.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도
- Ⅳ.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문제점
- Ⅴ.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
- Ⅵ.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수출통제, 상황허가, 물품등, 대외무역법령, 전략품목, 중개허가, 재수출통제

^{*}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국제통상학 전공 겸임교수

I. 서 론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확산 및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기미는 물론이고 군 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이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WMD 개발·확산사용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²⁾에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수출허가제를 통하여 수출을 관리하는 이른바 비확산 수출통제(export controls)³⁾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찍이 서방 국제사회는 냉전체제였던 1949년부터 코콤(COCOM)을 결성하여 당시 소련, 중공, 쿠바, 동구권 국가 등 공산권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였고,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에는 국제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WMD 확산과 재래식 무기의 불안정한 축적 및 테러단체에 대한 무기와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기별비확산 조약을 제정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결성하는 등 국제비확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국제규범을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관련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여 각종 무기와 무기의 개발·생산·사용에도 전용될 수 있는 민군겸용의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의 고시및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를 법제화하였으며, 2003년에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정부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2005년 이후부터 수출통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를 규율하는 현행 대외무역법(이하 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이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에 있어서 법체계가 정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중복 규정, '물품등'을 비롯한 중요한 용어들이 다양하고 모호하게 중첩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필요한 제도의 미비 또는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역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및 연구기관에도 수출통제 제도의 이행과 이해에 혼선을 야기함으로써 상당한 오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수출통제규범의 고찰 및 국내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¹⁾ 무기란 대량살상무기(핵생물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말한다.

²⁾ 비국가행위자란 개인, 기업, 테러리스트, 테러단체 등 국가가 아닌 행위자를 말한다.

³⁾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통제(export controls) 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일본은 안전보장 무역관리라고 한다.

⁴⁾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다.

수출통제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출통제에 관한 대외무역법령의 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및 무역업계 종사자들이 비확산 수출통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 교육 또는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Ⅱ. 비확산 수출통제 국제규범

현행 비확산 국제규범 체계는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WMD 군축비확산 조약5)과 WMD를 포함한 각종 무기의 개발제조 등에도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를 규율하는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RCR) 및 바세나르협정(WA)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과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지침(guideline)과 통제목록(control list)을 중심으로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살펴보기로 한다.6

1. 핵공급국그룹(NSG)

NSG 수출통제의 목적은 핵무기 비확산 및 핵 테러의 방지에 있다. NSG의 수출통제를 규율하는 지침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참가국 정부의 법령과 관행에 따라 이행되며 수출허가 결정은 참가국별로 수출허가 요건에 의거하여 취해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평화적 목적의 핵 거래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고, 핵 분야에서의 국제무역과 협력을 저해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무가국제 핵 비확산규범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분야의 무역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NSG 가이드라인은 원자력전용품목(Part 1)과 이중용도품목(Part 2)으로 구성되어 있다.

⁵⁾ 비확산 조약에서 NPT는 핵무기의 개발, 제조, 이전과 수령을 금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와 생물무기 금지협약(BWC)는 생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폐기 및 이전을 금지한다.

⁶⁾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규범에 관한 자세한 논의와 내용은 강호(2010), 「비확산 규범의 집행에 관한 국제법 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p.23-85 참조.

⁷⁾ Guidelines, (2017), Retrieved November 9, 2017, from http://www.nsg-online.org/en/guidelines.

1)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이란 핵무기 원재료인 핵물질과 핵물질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조된 품목을 말하며 이중용도품목과는 구별된다. 구체적으로는 i) 핵 원자 로 및 관련 장비, ii) 원자로의 비핵물질, iii) 핵물질의 재처리·농축변환 설비와 장비 및 중수 생산설비, iv) 상기 품목들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수출국은 원자력전용품목을 핵 비보유국에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① 수입국 정부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전용하 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보증 하에서만 수출을 허가하고,8) ② 모든 핵물질과 시설 은 불법 사용 및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방호조치 하에 있어야 하며, ③ 현 재 혹은 장래의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핵물질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에게만 수출해야 한다. ④ 농축시설이나 농축기술 의 수출 시 상대 수입국은 수입한 농축시설 및 기술에 기초한 어떠한 시설에서도 우라 늄을 20% 이상 농축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출국은 핵무기 또는 기 타 핵폭발장치에 사용가능한 민감한 시설·기술·자재의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 ⑥ 수입국 은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 최초 공급국에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3국으로부터 평 화적 이용을 보증 받아야 한다. ⑦ 수출국은 수출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확 산에 기여하지 않거나 핵 테러활동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해야 한다.99

2)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1992년 런던가이드라인 제2부(Part 1)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된 이중용도품목10)은 공작기계, 측정기, 질량분석기 등 우라늄 농축에 이용가능한 장치, 저온증류탑 등 중수 제조에 이용가능한 장치, 핵무기 기폭장치·측정치 등 광범위한 산업용 기기 및 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⁸⁾ INFCIRC/254/Rev.13/Part 1(November 8, 2016), Guidelines for Nuclear Transfers, para. 2. Available at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ocuments/infcircs/1978/infcirc 254r13p1.pdf.

⁹⁾ Ibid, paras.3~10.

¹⁰⁾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이란 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또는 군사력 증강에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물품 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그 통제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국 외의 시장에서의 획득가능성, 2) 효과적인 수출통제 가능성, 3)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규격화 할 수 있는 품목, 4) 기타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의 통제 여부이다. WA,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Dual-use goods, including Sensitive and Very Sensitive items (December 2005)," Available at www.wassenaar.org/controllists/2005/Criteria.

수출통제의 기본원칙은 ① 핵 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11)이나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주기 활동에 사용할 경우, ② 일반적으로 그런 활동에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핵무기 비확산 목적에 위배될 경우, ③ 용납될 수 없는 핵 테러 행위에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들은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수출허가, 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④ 통제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품목이더라도 그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핵폭발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법절차에 따라 이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⑤ 수입국으로부터 핵무기 등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 장소에 관한 진술서를 취득해야 하고, ⑥ NSG 비참가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재수출 시에는 원수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2)

2. 호주그룹(AG)

1) 수출통제 원칙

호주그룹은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은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가 생화학무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확산 및 테러의 위험의 감소에 수출통제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생화학무기 활동 또는 테러에 기여하지 않는 생화학 관련품목의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3)

호주그룹의 참가국들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제목록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데 통제대상국과 통제범위는 참가국 정부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통제품목이 생화학무기 활동 및 테러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참가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이 거부되기도 한다.¹⁴⁾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① 거래당사자의 불법조달 활동 등 생화학무기 관련 확산 및 테러에 관한 정보, ② 생물 또는 화학에 관 한 수입국의 능력 및 목적, ③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의 타당성 및 생물화학무기 개 발 가능성 면에서의 이전의 중요성, ④ 최종용도 및 종전에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이 거부

¹¹⁾ 핵폭발활동(Nuclear explosive activity)은 어떤 핵폭발장치나 하부시스템의 연구개발·설계·제조·건설시험 및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¹²⁾ Supra note 8, paras 2~7.

¹³⁾ Guidelines for Transfers of Sensitive Chemical or Biological Items, para 1. (June 2015), Available at http://www.australiagroup.net/en/guidelines.html.

¹⁴⁾ Ibid, para.2.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평가 등을 고려한다.15)

참가국의 수출자는 통제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생화학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aware)에는 이를 정부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국은 수출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화학무기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정부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캐치올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16) 아울러 참가국에게는 이러한 조치 및 허가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정보교환이 권장되고 있다.

2) 수출통제 대상품목

호주그룹의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화학작용제와 그 원료물질인 전구체, 이중용도 화학 제조 시설·장비 및 관련기술, 이중용도 생물장비 및 관련기술, 생물작용제, 식물성 병원 균 및 동물성 병원균(구제역 바이러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¹⁷⁾ 통제품목 중 기술은 화학무기 작용제와 전구체, 이중용도 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장비와 직접 관련된 기술¹⁸⁾을 말한다.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은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품목의 설치·작동·유지 및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기술도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생물작용제의 개발·생산을 위한 기술 및 이중용도 생물제조시설과 장비관련 기술 및 설명, 기능(skills)·훈련·작업지식·컨설팅서비스 등 기술지원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그룹은 '수출'을 호주그룹 통제품목이 국외로 선적 또는 전송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전자매체·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기술의 전송 즉 '기술의 무형이전'(ITT)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9)

3) 수출거부존중의 원칙(No undercut policy)

호주그룹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에 의해 수출이 거부된 '본질적으로 동일한'20)

¹⁵⁾ *Ibid*, para.4.

¹⁶⁾ Ibid, Catch-All.

¹⁷⁾ AG Common Control Lists, (2017), Retrieved November 2, 2017, from http://www.australiagroup.net/en/controllists.html.

¹⁸⁾ Control List of Dual-Use Chem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y and Software(May 2017), Available at http://www.australiagroup.net/en/dual_chemicals,html.

¹⁹⁾ *Ibid*.

^{20) &#}x27;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전'은 당해 품목의 사양(specifications)과 성능(performance)이 거부품목과 같거나

(essentially identical)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동 수출거부가 만료 또는 철회되지 않는한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의 없이는 수출허가를 승인할 수 없다. 이를 '수출거부존중의 원칙'(No undercut policy)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생물작용제 또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이중용도품목의 경우는 동일 수하인에게 판매되는 규격과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원칙의 요건은 참가국의 캐치올 통제에 따라 수출이 거부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1)

3. 미사일기술수출통제(MTCR)

1) 수출통제의 목적과 원칙

MTCR 가이드라인은 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를 통하여 WMD 확산리스크를 경감하고 통제품목에 대한 테러단체와 테러리스트의 획득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수출통제가 WMD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 한 개별 국가의 평화적 우주개발 프로그램과 이에 관한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으며, 평화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2) MTCR은 사정거리 300km 초과, 탄두중량 500kg 초과의 로켓시스템 또는 무인비행체(UAV)의 개발을 규제한다. 또한 완성시스템과 그 구성품 또는 완성시스템과 구성품의제조기술을 통제한다. 로켓엔진과 첨단소재 등 상업적 우주발사체(SLV)의 제조 기술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제조 기술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참가국의 우주개발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다. 23)

2) 수출통제 품목 및 수출요건

수출통제 목록은 카테고리(Cat. I 과 Cat. II)로 구분되어 있다. Category I (초민감품목)은 WMD의 운반과 직접 관계가 있는 미사일 등의 장비와 기술로서 여기에는 미사일(탑재중량 500kg 초과, 사정거리 300km 초과), 완성로켓시스템, 무인항공기(UAV) 및

유사하며, 수하인(consignee)도 상호 동일한 경우의 이전을 말한다.

²¹⁾ Guidelines for Transfers of Sensitive Chemical or Biological Items(June 2015), Available at http://www.australiagroup.net/en/guidelines.html.

²²⁾ MTCR and Trade, (2017), Retrieved November 21, 2017, from http://mtcr.info/trade.

²³⁾ Guidelines for Sensitive Missile-Relevant Transfers, para. 1(2017), Retrieved November 21, 2017, from http://mtcr.info/guidelines-for-sensitive-missile-relevant-transfers.

그 제조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으로부터 ① 신청목적으로만 사용하고, ② 수출국의 사전 동의 없이 개조 또는 복제하지 못하며, ③ 수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수출품목 또는 복제품(replicas)을 재수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assurance)를 받아야 한다. ²⁴⁾

Category II (민감품목)는 Category I 품목의 별도 구성품인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로서 여기에는 탑재능력 500kg 이하, 사정거리 300km 이하의 WMD 운반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로켓의 각단, 로켓추진장치, 발사장비, 관련 컴퓨터 및 생산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WMD 운반과의 관계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수출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최종용도 증명이 요구되며 WMD 확산우려, 수입국의 미사일 및 우주개발계획의 목적과 능력, 미사일 개발에 대한 수출의 영향, 최종용도의 평가, 테러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엄격한 허가심사가 요구된다. 25)

3) 기술통제 및 캐치올 통제

MTCR의 수출통제 대상기술은 MTCR 통제품목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참가국이 국내법에 의하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제한다. 그리고 통제품목과 직접 연관된 개발기술 및 생산기술의 이전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심사와 통제를 실시한다. 26) 2006년 MTCR 총회는 MTCR 관련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감 미사일관련 이전에 관한 MTCR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이전"(transfers)에는 유형이전 뿐 아니라 무형이전도 포함시켰다. 27) http://www.mtcr.info/english/press.html

통제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WMD 운반수단과 관련하여 완성품 또는 구성품의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 허가당국의 통보가 있거나, 수출 자가 완성품 또는 부품의 형태로 WMD 운반수단의 개발 등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는 것 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출 시에 수출허가가 필요하다.²⁸⁾

²⁴⁾ Ibid, para.2.

²⁵⁾ Ibid, para.3.

²⁶⁾ Ibid, para.4.

²⁷⁾ Plenary Meeting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openhagen, Denmark, Press releases, (2017), Retrieved Nov. 12, 2017, from http://www.mtcr.info/english/press.html.

²⁸⁾ Supra note 23, para.7.

4. 바세나르협정(WA)

1) 수출통제 원칙 및 정보교환

바세나르협정29) 참가국들은 자발적으로 참가국들 상호간의 무기이전과 민감한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무기이전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국 간 수출통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한다.30) 모든 통제품목의 이전(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결정 등 수출통제에 관한모든 조치는 참가국의 국내 법령 및 정책에 따르며 참가국들은 각국의 재량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한다.31) 바세나르협정 참가국들은 비참가국에 대한 이전 승인(approval) 및 거부(denial) 사실을 다른 참가국에 통보한다. 이와 관련 어느 참가국의 거부통보는 다른참가국들에게 유사한 이전을 거부할 의무 즉 수출거부존중(No-undercut)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32)

2) 수출통제 대상품목

바세나르협정 참가국들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의 불법 이전 및 재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목록에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 통제목록은 군수품목(Munitions List)과 이중용도품목(Dual-Use List)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총기류, 폭탄, 탱크, 장갑차, 항공기, 군함, 군용차량, 군용탐조등 등 22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항법, 해양 및 추진장치 등 크게 9개 카테고리와 기본품목, 민감품목 및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통제목록(control list)은 참가국의 기술발전과 경험을 반영하여 전문가그룹(EG) 회의를 통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²⁹⁾ 바세나르협정(WA)의 정식 명칭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 정'(The Wassenaar Arrangements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다.

³⁰⁾ Guidelines & Procedures, including the Initial Elements(December 2015, para.2, Available at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ploads/2016/01/uidelines-and-procedures-including-the-Initial-lements-2015.pdf,

³¹⁾ *Ibid*, para.3.

³²⁾ Ibid, para.4.

3) 전략기술의 수출통제

바세나르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자의 개발생산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통제한다. 그러나 ① 수출 승인된 물자의 설치·작동·유지·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② 배포 직후 제한 없이 일반에 공개된 기술 ③ 기초과학연구, ④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33) 아울러 바세나르협정은 기술이전 통제에 있어서 유형 또는 무형의 이전방법에 관계없이 통제하고, 특히 기술의 무형이전(ITT)에 관하여 ①국내 법령에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정의의 명료화 및 내용의 구체화, ② 통제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개인, 기업 및 학술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자율적인 수출통제의 촉진 등을 권장하고 있다.34)

4) 캐치올 통제

바세나르협정은 통제목록에 없는 이중용도품목(Non-Listed Dual-Use Items)을 일정 조건하에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를 2003년에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기금수(arms embargo) 대상국 등에 수출 시 수출국 당국이 당해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적 최종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출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는 관계당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때 관계당국은 관련 수출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5)

5.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품목이 국가 뿐 아니라 테러단체 등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WMD 및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

³³⁾ General Software Note,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 (2017. 12. 7), Available at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ploads/2017/12/2017_List_of_DU_Goods_and_Technologies_and_Munitions_List.pdf.

³⁴⁾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Controls (Agreed at the 2006 Plenary). Available at www.nti,org/media/pdfs/wassbestpractices2006b.pdf?_=1316715062.

³⁵⁾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Control of Non-Listed Dual-Use Items, (2003), Retrieved Nov. 17, 2017, from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ploads/2015/07/Non-listed_Dual_Use_Items.pdf.

도하는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금지하며, ② 전략품목의 수출은 물론이고, 경유, 환적, 중개³⁶⁾, 재수출, 자금 및 서비스 제공, 운송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③ WMD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내 법제의 구축, 개발, 검토 및 운용 그리고 수출통제 법규위반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벌칙제도의 확립 및 집행을 의무화하였다.³⁷⁾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국제연합(UN)의 모든 회원 국들에게 국제비확산조약 가입 여부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가 여부를 불문하고 비확산 수출통제 규범의 국내 이행과 집행을 강제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Ⅲ.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도

1. 법적근거 및 수출허가기관

우리나라는 WMD 비확산 국제조약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였으며 미국과는 1987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989년 산업 자원부는 대외무역법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조항 신설 등 수출통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 동법에 전략물자의 고시 및수출허가 등 수출통제를 법제화하였고, 2003년부터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여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중개, 경유, 환적 및 최종용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통제품목에 따라 관련 법령과 허가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즉 이중용도품목과 일반방산물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북 반출입 품목은 남북교류협력에

³⁶⁾ 중개(brokering)는 무기 및 그 구성품 또는 생산 장비 또는 기술의 이전수입수출자금제공 또는 제조에 관한 서비스를 상담 또는 주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 S/RES/1540(2004. 4. 28) 각주 정의 참조, Available at http://www.un.org/en/ga/search/view_view_doc.asp?symbol=S/RES/1540(2004).

³⁷⁾ Ibid, paras, 1~3.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현장 제25조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해 야 한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1540호의 의무는 유엔현장 제103조에 따라 다른 조약이나 협정상의 의무에 우선한다.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가 각각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근거하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과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등의 생물작용제에 대한 제조 및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근거 법령	통제품목	허가기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물품/기술/소프트웨어) 일반방산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플랜트기술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래식 무기체계 등 주요방산물자38)	방위사업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북 반출반입 물자	통일부

〈표 1〉 우리나라 수출통제 관련법령 및 허가기관

2. 수출통제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소재·전자·컴퓨터·정보통신·센서·레이저·항공우주·해양·추진장치 및 원자력전용품목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통제품목이 모두 대상이며, 그 밖에도 화학무 기금지협약(CWC)의 독성화학물질과 그 전구체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생물작용제 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⁹⁾

수출통제 대상지역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 또는 경제권이며, 이를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다. "가" 지역은 4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나" 지역은 "가" 지역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다. "가" 지역은 현재 총 29개국이며⁴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대부분 면제하고 사후보고로 대체하고 있다.⁴¹⁾

³⁸⁾ 주요방산물자는 총포류,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 장갑차, 레이더 등 통신 전자장비, 야간투시경, 화생방장 비 등이고, 일반방산물자는 헬멧, 군복, 군화 등이다(방위사업법 제35조).

³⁹⁾ 이중용도품목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의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6호, 2018.4.16. 시행) 별표 2에 수록되어 있다.

⁴⁰⁾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29개국이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6 참조.

⁴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1조의1 및 제29조의2.

3. 수출허가

이중용도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크게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한다. 수출허가는 다시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및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⁴²⁾로 나뉜다. 개별수출허가는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며,⁴³⁾ 포괄수출허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⁴⁴⁾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 WMD와 미사일의 개발생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거나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한정보제공의 기피와 같은 의심징후 등 특정 상황의 경우 신청해야 하는 허가이며,⁴⁵⁾ 경유·환적허가는 전략물자가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 시에, 중개허가는 제3국 간 중개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허가이다.⁴⁶⁾

수출허가는 각종 무기의 개발생산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⁴⁷⁾ 그리고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수입자,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및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⁴⁸⁾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등이 스스로 전략품목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교육 및 감사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품목의 해당여부 판정, 거래심사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출통제 법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자율준수(Compliance Program)라고 한다. 49)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수출통제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 품목의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 및 수출통제 규범준수 등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있다. 50) 아울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3등급(A, AA, AAA)으

⁴²⁾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1조~제49조 참조.

⁴³⁾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9조.

⁴⁴⁾ 포괄수출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8조~제39조 참조.

⁴⁵⁾ 상황허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3, 동 시행령 제33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제52조 참조.

⁴⁶⁾ 대외무역법 제24조(중개허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0조의2(경유·환적허가) 참조.

⁴⁷⁾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조.

⁴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

⁴⁹⁾ 전략물자관리원(2009),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p.17.

⁵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격 유지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1조.

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개별수출허가 심사면제, 서류면 제, 허가면제 또는 허가처리기간 단축(15일 \rightarrow 10일 \rightarrow 5일)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1

5.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제29조에 의거 2007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략품목 해당여부 판정, 전략품목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자율준수기업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탁,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규범 제정 및 통제목록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52)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략품목 해당여부 판정과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수출통제 관련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3) www.yestrade.go,kr〉 참조

Ⅳ.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문제점

1. 법체계 및 목적 관련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전반에 관한 법체계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출통제에 관한 법체계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되어 있어 각각 행정규칙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관 리규정(제1조)은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조)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의거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 자체가 각각 다르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수출통제의 목적이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즉 대외무역

⁵¹⁾ 기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19 참조.

⁵²⁾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osti.or.kr 참조.

⁵³⁾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yestrade.go.kr〉 참조.

법(제1조)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전 및 국가안보의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54) 더욱이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은 대외무역법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통제에 관한 조항(법 제19조~31조)들은 이 총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2. '물품등' 수출통제 대상품목에 대한 각종 용어의 문제점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에서 '물품등'은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의 '물품등'과 상충되거나 모순된다. 대외무역법 제2조는 무역을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하고, '물품등'을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통제와관련해서는 "~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기술 포함)"이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품등'을 '전략물자'로 규정함으로써 '물품등'이라는 명칭은 같지만 대상과 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복잡하고 법, 시행령, 고시별로 그의 정의가 다르든가 또는 차이가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출통제의 대상을 '물품등', '전략물자', '전략물자등', '대량파괴무기등', '대량파괴무기 관련물품등'으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등'도 법에서와는 달리 고시에서는 물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로 정의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용역이 제외되어 있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⁵⁴⁾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표 2〉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상 '물품등'의 정의

구 분	용어의 명칭	용어의 정의	관련조항
대외무역법	물품등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2조
	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품등'(기술 포함)	제19조2
	전략물자등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제23조
	대량파괴무기등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19조3
대외무역법 시행령	기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	제32조의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물품등	물품(물질·시설·장비·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2조의1
	전략물자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	제2조의2
	전략물자등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제2조의3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등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	제50조의1

출처 : 필자 정리.

3. 상황허가 요건의 모호성

법 제19조의3이 규정하는 상황허가의 요건 "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② 대량파괴무기등의 개발제조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 "에서 먼저 ①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그 표현이 모호하며, ②는 두 가지해석이 가능하다. 즉 첫째는 '물품등'이 그 자체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최종사용자가 '물품등'을 그러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상황허가 즉 캐치올 (catch-all) 통제의 근본 취지는 설사 통제목록에 없거나 목록에는 있지만 기술적 사양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가 의심스러우면 통제하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황허가 요건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기술이전 통제에 관한 법제 미흡

바세나르협정을 비롯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전략기술의 수출(이전)55)을 물품인 전략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전략기술의 유형이전은 물론이고 이메일, 팩스, 인터넷 등의 수단에 의한 무형이전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50 이와 반면 우리나라는 전략기술 및 기술의 종류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고 기술이전 방식에 있어서도 유형이전과 무형이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메일, 전화, 팩스 및 구두전달등에 의하여 기술이 손쉽게 이전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의 무형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므로 보완이 시급하다.57)

5. 경유·환적 허가규정의 모순

경유환적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3조3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하여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전략물자등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라고 반복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유 또는 환적 장소가 누락되어 있다. 더군다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6조는 법 또는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라함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의 모순을 초래하고 상위법에 저촉함은 물론 경유환적 허가신청 대상자에서 수출자(화주)와수입자(수화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환적 허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⁵⁵⁾ 이전(transfer)은 해외로의 선적, 전송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유통 또는 어떤 품목의 최종용도 나 최종사용 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734,16 참조.

⁵⁶⁾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강호(2007), "전략기술 무형이전 통제," 「안보통상연구」, 제1 권 제1호, pp.103-125 참조.

⁵⁷⁾ 현행 법령은 기술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고, 이전방식에 관하여는 "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②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③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기술의 유형 또는 무형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참조.

6. 미국 재수출 통제의 대응 근거 부재

현행 수출통제 관련 법령에는 미국의 재수출 등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집행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미국은 자국산 완제품은 물론 일정비율(25%) 이상의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외국산 제품의 제3국 수출 및 외국에서 자국산 기술의 제3국 외국인에 대한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58)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와 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 미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국산 수출통제 품목을 제3국에 재수출 시 미국의 서면동의(정확하는 미국의 재수출 허가) 없이는 재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9)

V.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

1. 수출통제 법체계 정립

현재 수출통제에 관한 법체계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구성되어 있는 바 대외무역법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수출통제법'이라 칭하고 여기에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묶어 현행 대외무역법과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⁰⁾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지적된 대외무역법과 동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출통제와의 법체계상 부조화, 목적의 불일치, '물품등' 용어의 정의 및 범위의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⁶¹⁾ 일례로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관련 WTO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래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현행법률로 독립, 제정한 것이다.⁶²⁾

⁵⁸⁾ 미국의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에 관한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730.5, Available at https://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docs/410-part-730-general-in formation/file; 전략물자관리워(2010), 「미국의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pp.1~2.

⁵⁹⁾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Protection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1987년 9월 11일 서명, 1989년 5월 11일 발효) 4. 재수출(Re-export) 참조.

⁶⁰⁾ 동일한 취지의 논지에 관해서는 김현지·김대완최승환(2007),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 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2호, p.168 참조.

⁶¹⁾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수출통제에 관한 조항은 13개(제19조~제31조)로서 벌칙 조항(7개)을 제외한 대외무역법 전체 조항(52개)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⁶²⁾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참조.

2. 통제품목 용어의 간소화 및 보강

'물품등', '전략물자', '전략물자등', '대량파괴무기등',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 다양한용어로 쓰이고 있는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품목'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략품목'이라 함은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무기 및 이중용도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로 정의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군 겸용의 이중용도품목 (dual-use items)은 물자(goods)⁶³⁾, 기술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⁶⁴⁾ 그 중 '전략물자'는 그의 일부인 물자에만 해당될 뿐이므로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략품목'(strategic items)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⁶⁵⁾

아울러, 대량파괴무기를 대량살상무기로 바꾸어 써야 한다.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 무기를 대량파괴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로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종의 무기가 모 두 공통적으로 살상력을 가지고 있으나 파괴력을 동시에 가진 무기는 오직 핵무기 뿐 이다. 따라서 이들 3종 무기의 공통점은 살상력이므로 '대량살상무기'로 호칭하는 것이 이들 무기의 특성과 고루 부합하는 것이다. 국방부도 대량살상무기라 칭하고 있다.60

3.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국제수출통제체제 규범인 지침과 그 취지를 살려 상황허가(법 제19조의3)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즉 "통제목록에 없는 품목이거 나 통제기술의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더라도 최종사용자가 WMD 또는 그 운반수단의 개발, 제조, 사용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67)

무기관련 이중용도품목은 본질적으로 통제목록에 수록되어 있건 없건 군사용으로 사

⁶³⁾ 물자(物資)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이다. 여기에서 물건(물품)의 영어 표현은 goods, articles, commodities 또는 supplies이고 재료는 materials이다.

⁶⁴⁾ 바세나르협정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목록도 품목별로 공통적으로 물자(A: 시스템·장비, B: 시 협·검사·생산 장비, C: 소재), 소프트웨어(D) 및 기술(E)로 구성되어 있다.

⁶⁵⁾ 미국 수출관리규정(EAR)도 품목(items)을 물품(commodity), 소프트웨어와 기술로 정의한다.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EAR) Part 772-page 22 참조. 또한 EU도 마찬가지다. EU Council Regulation (EC) No 428/2009, Art.2.

⁶⁶⁾ 국방부(2007),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p.10.

⁶⁷⁾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Control of Non-Listed Dual-Use Items (2018. 3. 17), Available at www.wassenaar.org/guidelines/docs/Non-listed_Dual_Use_Items.pdf 참조.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최종용도가 군사용이거나 최종사용자가 의심되면 수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⁶⁸⁾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목록은 불변이 아니며 기술의 발전과 신기술 개발에 따라 기존 품목 사양의 수정, 삭제 또는 신규 품목의 추가 등 매년 개정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전략기술의 정의 보완 및 이전방식의 구분

전략기술의 정의 및 종류를 보완하고 유형매체에 의한 기술이전과 무형매체에 의한 기술이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전략기술'이라 함은 "무기 및 이중용도 전략물자(물품)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세부정보를 말한다."69) 그리고, 기술을 기술자료와 기술지원으로 나누어 ① "기술자료는 청사진, 설계도, 매뉴얼, 사용설명서 등으로서 보통 문서, 디스크, Tape, CD-ROM, USB 등과 같은 유형의 표현매체 또는 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 ② "기술지원은 기술지도, 기능, 훈련, 작업지식, 컨설팅서비스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이전 방식에 관하여 ① "유형이전은 기술자료를 그 존재형태 그대로 외국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외국으로 발송 또는 휴대하여 외국에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무형이전은 이메일, 인터넷, 전화 및 팩스 등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지원의 경우는 구두 또는 시연 등의행위를 통하여 교육, 훈련, 작업지식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개 및 경유·환적 허가제 개선

현재 허가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중개허가⁷⁰⁾ 및 경유환적 허가 제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개무역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 하고, 사전 등록 및 중개업체의 목록 유지를 통하여 등록된 중개업체가 수출통제 대상품 목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중개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⁶⁸⁾ 강호(2017. 6. 30), "수출통제 강화, 북한 핵미사일 확산 막아야", 「서울경제」, p.38 참조.

⁶⁹⁾ WA,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 Public Document, Vol. II, p.3.

^{70) 2011~2015}년의 5년 간 경유환적 허가건수는 4건, 중개허가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2015), 「전략물자 종합 통계집」(참고자료), p.12.

이다. 아울러 경유환적 허가신청 대상자를 대외무역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에 "국 내 항만이나 공항에서 전략품목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수출자(화주), 수입자(수화인), 운송사업자 또는 국제물류주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고시 상의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6. 미국 재수출 통제 국내 이행 근거 규정

미국은 자국산 물품 또는 기술에 국적 개념을 도입하여 ① 해외로 수출된 미국산 완제품, ② 일정 비율(10% 또는 25%)을 초과하는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의 제3국 수출, ③ 외국으로 이전된 미국산 기술이 외국 내의 제3국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당해 기술이 제3국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deemed re-export)하여 사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재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형사벌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수출입 금지, 미국 정부조달 참가배제 및 기술공여가 금지되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71)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체결한양해각서 및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72)에 의거 미국의 재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그러한 통제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수출통제 법령에 미국 재수출 통제에 대한 국내 이행과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7. 거래금지대상자 등 목록의 명칭 통일

현재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Denial List를 블랙리스트(blacklist)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비확산 수출통제 규범을 위반하여 거래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요주의대상자 등의 명단을 Denial list(우려대상거래자목록)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이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Denial list는 문자 그대로 '거부목록'이라는 뜻인데 이 목록은 아래 〈표 3〉과 같이 바세나르협정의 어느 참가국에 의해 수출허가가거부된 정보(목적지, 거부품목 등)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거부통보(denial notifications)73)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부목록은 각종 제재대상자 목록 중의 하

⁷¹⁾ 전략물자관리원(2010), 「미국의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pp.1~2.

⁷²⁾ EAR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를 규율하는 미국 수출통제법(EAA)의 시행령이다. 그 전문은 Available at 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⁷³⁾ Guidelines & Procedures, including the Initial Elements(December, 2015), Appendix I, p.8,

나에 불과하므로 모든 명칭의 제재대상자 명단을 지칭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블랙리스트'로 명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운영주체별 제재대상자 목록 현황

운영 주체	제재대상자 목록 (영문)	비고
유엔 안보리	Sanctions List	유엔 제재대상자 명단
바세나르협정	Denial notifications	수출허가 거부내역 공유
미 국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불법수출) 수출금지 대상자 수출거래 시 허가신청 필수 최종용도 미확인 대상자 미국 내 자산동결 대상자
일 본	Foreign End User List	수출거래 시 허가신청 필수

출처 : 필자 정리

8. 기타 수출통제 관련 용어의 개선

기타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용어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즉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전략무역관리원'으로, '오스트렐리아그룹'을 '호주그룹'으로, 고시 별표 3의 '군용물자품목'을 '군수품목'으로 바꿔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스템 및 전략물자관리원 웹사이트 상의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 동향'을 '수출통제 동향'으로 바꾸는 등 '전략물자'로 시작되는 관련 주제와 용어들을 '전략품목' 또는 '수출통제'로 각각 깔끔하게 수정해야 한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비확산 조약의 당사국이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가국으로서 비확산 수출통제 국제규범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전략품목의 수출통제는 국가안보의 중대

Available at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ploads/2016/01/Guidelines-and-procedure s-including-the-Initial-Elements-2015.pdf,

한 이익보호가 목적이므로 국제규범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 가능한 한 충실한 준수가 요 망된다. 그런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수출통제 분야를 대외무역법령에 규정한 결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체계 상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 독립시켜 가칭 '수출통제법'을 입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수출통제규범에 입각한 수출통제의 대상은 전략품목 즉 무기와 이중용도품목이며 이중용도품목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대상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략물자'를 수출통제 대상의 전부이며 대명사인 것처럼 관계법령과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서적,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에서도 똑같이 기술되고 있다. '4' 같은 맥락에서 으레 쓰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라는 표현도 옳지 않은데, 이는 '전략물자'만이 수출통제 대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통제(export controls)는 본질적으로 전략품목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그저 '수출통제'라고 해도 충분하다. 다만, 굳이 필요 시 붙이려면 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품목 수출통제' 또는 '비확산 수출통제'라고 호칭해야 보다 정확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수출통제의 대상을 '전략물자'에만 집착하다보니 대외무역법령상 통제품목의 명 칭도 상황에 따라 '물품등', '전략물자', '전략물자등', '대량파괴무기등',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으로 둔갑하여 혼용됨으로써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2005년 수출통제제도의 본격 시행 당시 정부당국의 충분한 지식의 결여와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시작이 잘못된 결과 정부, 산하기관 및 학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교육받은 무역업 종사자, 대학생 및 연구원들도 그런 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조속히 수출통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수요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⁷⁴⁾ 일례로 www.yestrade.go.kr은 전략물자를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u>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u>"로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2015)은 "재래식 무기와 WMD, 미사일 그리고 이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u>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u>"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다."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전략물자의 물자는 물품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와 기술은 물품이 아닌데도 이들을 물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호 모순상충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2015),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서울: 박영사, p.165.

참고문헌

강호(2007),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pp.103-125. 강호(2010), 「비확산 규범의 집행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 위논문.

강호(2017. 6. 30), "수출통제 강화, 북한 핵·미사일 확산 막아야", 「서울경제」, p.38.

국방부(2007),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p.10.

김현지·김대원·최승환(2007),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 법령의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통 상연구」, 제12권 제2호, pp.153-175.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2015), 「전략물자 종합 통계집」, p.12.

전략물자관리원(2009),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p.17.

전략물자관리원(2010), 「미국의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pp.1~2.

전략물자관리원(2015), 「수출통제의 이해」, 서울: 박영사, p.165.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6호, 2018. 4. 16. 시행).

EU Council Regulation (EC) No 428/2009 of 2 May 2009.

http://www.australiagroup.net/en/controllists.html

http://www.australiagroup.net/en/dual chemicals.html

http://www.australiagroup.net/en/guidelines.html

https://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docs/410-part-730-general-information/file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ocuments/infcircs/1978/infcirc254r\\13p1.pdf$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ploads/2016/01/Guidelines-and-procedures-including-the-Initial-Elements-2015.pdf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ploads/2016/01/Guidelines-and-procedures-including-the-Initial-Elements-2015.pdf

http://mtcr_info/guidelines-for-sensitive-missile-relevant-transfers

http://www.nsg-online.org/en/guidelines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540(2004)

http://www.mtcr.info/english/press.html

http://www.mtcr.info/trade

http://www.wassenaar.org/wp-content/uloads/2017/12/2017_List_of_DU_Goods_and_Te chnologies_and_Munitions_List.pdf

www.australiagroup.net/en/guidelines.html

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www.kosti.or.kr

www.nti.org/media/pdfs/wassbestpractices2006b.pdf?_=1316715062

www.wassenaar.org/controllists/2005/Criteria

www.wassenaar.org/guidelines/docs/Non-listed_Dual_Use_Items.pdf

www.yestrade.go.kr

A Study on Development Proposals for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Ho Kang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norms, analyze current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nd identify the problems thereof, presenting several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as a signatory of non-proliferation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 norms, irregardless of hard or soft laws.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05; however, it contains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objective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s, catch-all requirements, brokering license, response to the U.S. re-export controls, and so on.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include (i) enacting an independent law integrating the current dual-use items export control law and regulations, (ii) making use of the term of "strategic items" as a uniform terminology replacing 'goods etc.', 'strategic goods(inclusive of technology)', 'strategic goods, etc.', 'WMD, etc.' so as to preclude any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iii) rewriting the catch-all control requirements, (iv) introducing registration system of brokering firms, (v) including provisions to comply with U.S. reexport controls, and (vi) providing stakeholder with correct and full information on export controls.

(Key Words)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Norms, Legal System, Re-export Controls, Catch-all Requirements, Strategic Items